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25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문정복·손명수·이춘석
박은정·김영환·박 정
이재관·김영배·김준혁
박선원·이재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용어가 ‘회화지도’에 머물러,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작문·시험 대비·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출입국관리 관계 하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해당 체류자격을 ‘회화지도(E-2)’로 규정하는 등 용어 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변화된 외국어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

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하여,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법률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 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u>회화지도 체류자격</u> 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 ----- ----- ----- ----- ----- ----- ----- ----- <u>외국어 교육 체류자격</u> ----- ----- ----- -----.
1. ~ 4.(생략)	1. ~ 4.(현행과 같음)